경산 진량선화지구 호반베르디움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8.08.23.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산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아파트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8.23.) 현재 경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인 분(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경산시 고시」제2017-52호에 의거 청약 신청자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8.08.23.)를 기준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상 경산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신청자(2018.05.23. 이전부터 계속 거주)가 경산시 3개월 미만 거주 신청자 및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경산시 3개월 미만 거주 신청자 및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거주 신청자는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전체 세대수의 10%에서 20%로 확대하여 공급하며, 전체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에게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1,2순위 모두 적용)
  –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다만, 해당주택건설지역에 일정기간 거주요건(예3개월 또는 1년등)이 설정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볼 수 없음(2018.01.02. 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에서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이상 가입자에서 본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의 거주자로 보는 경우 청약 해당 지역의 우선공급 대상자로 하되 해당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합니다. (2018.1.2.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노약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8.23.)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의 경우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경우에는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1층의 세대가 바로 위층 주택의 세대수에 비하여 적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 및 제8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그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는 2015.04.01.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며, 85㎡이하 주택으로써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 및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주변여건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사업주체가 임의로 책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형 85㎡이하 일반공급 주택은 2016.08.1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 및 「경산시 고시」 제2018-925호에 의거 가점제 40%가 적용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구체적인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
  ② ①번에서 입주자선정 후 남는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주택형별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③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세대수의 40% 이내 예비입주자를 선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절상함)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gsji-hoban.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의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은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추첨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급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 당사자는 6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정	2018.08.29.(수)	2018.08.30.(목)	2018.08.31.(금)	2018.09.06.(목)	2018.09.18.(화) ~2018.09.20.(목)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www.apt2you.com 로그인후 조회 가능)	—
장 소	■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금융결제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당사 견본주택

※ 일반공급 청약의 경우 스마트폰 서비스(2018.05.28. 접수 분부터 적용)가 실시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2018.05.04.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산시청 건축과-31761호(2018.08.2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진량선화지구 1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6~20층 6개동 총 549세대
  [특별공급 235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54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54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110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17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0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기관 추천	신혼 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계	일반분양 세대수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민영주택	2018000954-01	59.9909A	59A	59.9909	23.3416	83.3325	45.7094	129.0419	32.1105	258	23	52	25	8	108	150	13	2020년 11월
	2018000954-02	59.9386B	59B	59.9386	23.6565	83.5951	45.6696	129.2647	32.0825	20	3	4	2	1	10	10	1	
	2018000954-03	84.9777	84	84.9777	27.9655	112.9432	64.7479	177.6911	45.4849	271	28	54	27	8	117	154	14	
	합 계									549	54	110	54	17	235	314	28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주택형	구분	공급 세대수	층 구분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금 1회 계약시	계약금 2회 2018.10.18	중도금 1회 2019.01.17	중도금 2회 2019.05.17	중도금 3회 2019.09.17	중도금 4회 2019.12.17	중도금 5회 2020.03.17	중도금 6회 2020.06.17	잔금 입주지정일
59.9909A	59A	258	1	11	40,316,000	157,184,000	197,500,000	10,000,000	9,800,000	19,600,000	19,600,000	19,600,000	19,600,000	19,600,000	19,600,000	60,100,000
			2	13	40,316,000	161,584,000	201,900,000	10,000,000	10,200,000	20,000,000	20,000,000	20,000,000	20,000,000	20,000,000	20,000,000	61,700,000
			3	13	40,316,000	165,984,000	206,300,000	10,000,000	10,700,000	20,500,000	20,500,000	20,500,000	20,500,000	20,500,000	20,500,000	62,600,000
			4	13	40,316,000	172,584,000	212,900,000	10,000,000	11,300,000	21,100,000	21,100,000	21,100,000	21,100,000	21,100,000	21,100,000	65,000,000
			5층이상	208	40,316,000	179,084,000	219,400,000	10,000,000	12,000,000	21,800,000	21,800,000	21,800,000	21,800,000	21,800,000	21,800,000	66,600,000
59.9386B	59B	20	1	1	40,281,000	157,219,000	197,500,000	10,000,000	9,800,000	19,600,000	19,600,000	19,600,000	19,600,000	19,600,000	19,600,000	60,100,000
			2	1	40,281,000	161,619,000	201,900,000	10,000,000	10,200,000	20,000,000	20,000,000	20,000,000	20,000,000	20,000,000	20,000,000	61,700,000
			3	1	40,281,000	166,019,000	206,300,000	10,000,000	10,700,000	20,500,000	20,500,000	20,500,000	20,500,000	20,500,000	20,500,000	62,600,000
			4	1	40,281,000	172,619,000	212,900,000	10,000,000	11,300,000	21,100,000	21,100,000	21,100,000	21,100,000	21,100,000	21,100,000	65,000,000
			5층이상	16	40,281,000	179,119,000	219,400,000	10,000,000	12,000,000	21,800,000	21,800,000	21,800,000	21,800,000	21,800,000	21,800,000	66,600,000
84.9777	84-1 (101동1~4호 102동1~4호 103동 4호)	172	1	9	57,108,000	212,792,000	269,900,000	10,000,000	17,000,000	26,800,000	26,800,000	26,800,000	26,800,000	26,800,000	26,800,000	82,100,000
			2	9	57,108,000	218,792,000	275,900,000	10,000,000	17,600,000	27,400,000	27,400,000	27,400,000	27,400,000	27,400,000	27,400,000	83,900,000
			3	9	57,108,000	224,792,000	281,900,000	10,000,000	18,200,000	28,000,000	28,000,000	28,000,000	28,000,000	28,000,000	28,000,000	85,700,000
			4	9	57,108,000	233,792,000	290,900,000	10,000,000	19,100,000	28,900,000	28,900,000	28,900,000	28,900,000	28,900,000	28,900,000	88,400,000
			5층이상	136	57,108,000	242,792,000	299,900,000	10,000,000	20,000,000	29,800,000	29,800,000	29,800,000	29,800,000	29,800,000	29,800,000	91,100,000
	84-2 (105동1~4호 103동 3호)	99	1	4	57,108,000	211,492,000	268,600,000	10,000,000	16,900,000	26,700,000	26,700,000	26,700,000	26,700,000	26,700,000	26,700,000	81,500,000
			2	5	57,108,000	217,392,000	274,500,000	10,000,000	17,500,000	27,300,000	27,300,000	27,300,000	27,300,000	27,300,000	27,300,000	83,200,000
			3	5	57,108,000	223,392,000	280,500,000	10,000,000	18,1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85,000,000
			4	5	57,108,000	232,292,000	289,400,000	10,000,000	19,0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88,200,000
			5층이상	80	57,108,000	241,292,000	298,400,000	10,000,000	20,000,000	29,600,000	29,600,000	29,600,000	29,600,000	29,600,000	29,600,000	90,800,000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제세공과금, 각종부담금, 택지관련 공사비), 기본형 건축비(지상층,지하층 건축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향별, 층별 등으로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 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시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선납 할인액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59.9909A	59.9386B	84.9777	비고
견본주택 등의 약식 표기	59A	59B	84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시관 및 카다록/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동일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을 득한 아파트(공동주택)입니다.
- 주택형 표기는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기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 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 및 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공용 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수 있으며, 이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 또는 소수점이하의 면적 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 금액이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었고,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분양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 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공급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은 본 아파트의 건축 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 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고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별사용검사를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사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할인율)이 적용되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해서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선납할인 적용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납부한 경우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음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이납 시 연체료가 가산 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 적용 주택으로 공급 전용면적 85㎡이하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특별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의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무주택 대한 주택 특별공급" 적용 주택으로 공급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특별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는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지원 및 결혼 출산을 촉진하기 위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적용 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하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에서 특별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적용 주택으로 공급 주택형별 세대수의 3% 범위에서 특별공급 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II 특별공급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 신청 및 당첨자 선정 일시 ·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18.08.29.(수) (APT2you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APT2you)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 국민은행 가입자 포함) • 사업주체 견본주택(노약자 ·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불가자에 한함)

■ 당첨자 계약 체결일 : 2018.09.18.(화)~2018.09.20.(목) [3일간, / 시간 : 10:00~16:00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8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각각의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어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속 · 비속으로서 가족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촉진하여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은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표 아래 참조)
청약신청 방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주택형별 세대수의 4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 부여(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당첨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된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된 것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당첨은 무효 처리합니다. •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적격 여부 불충분, 주택 유무 작오등으로 발생한 부적격 당첨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부적격 처리된 경우, 유주택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 세대)

구 분			59A	59B	84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5	1	7	13
	장애인		10	1	11	22
	중소기업 근로자		6	1	7	14
	북한이탈주민		2	0	3	5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39	3	41	83
		일반공급(25%)	13	1	13	27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25	2	27	5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8	1	8	17
합 계			108	10	117	235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54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 서류를 받으신 분(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추천기관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의료부대됨) – 장애인 : 경북도청 사회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 북한이탈주민 : 통일부 하나원 교육기획부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며,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 54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만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 상의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8.08.23.)를 기준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상 경산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신청자(2018.05.23. 이전)가 경산시 3개월 미만 거주 신청자 및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기준	점수	비고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구분	점수	점수	구분	점수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 · 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 · 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 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공급 세대수의 20% 이내) : 110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8.08.23.) 경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이상)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중 자녀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를 구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자(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경산시에 최근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 · 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경산시에 최근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 · 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002,590원	5,846,903원	6,220,005원	6,625,810원	7,031,615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003,108원	7,016,284원	7,464,006원	7,950,972원	8,437,938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002,591원 ~ 6,003,108원	5,846,904원 ~ 7,016,284원	6,220,006원 ~ 7,464,006원	6,625,811원 ~ 7,950,972원	7,031,616원 ~ 8,437,938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003,109원 ~ 6,503,367원	7,016,285원 ~ 7,600,974원	7,464,007원 ~ 8,086,007원	7,950,973원 ~ 8,613,553원	8,437,939원 ~ 9,141,100원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통계청 고시))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05,805)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무월수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①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 · 비속 ②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 · 비속포함))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이내) : 17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8.08.23.) 경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 ·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당첨자 선정 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신청자(2018.05.23. 이전)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6조 제2항에 따라 제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8.23.) 현재 경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인 분(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경산시 고시」 제2017-52호에 의거 청약 신청자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8.08.23.)를 기준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상 경산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신청자(2018.05.23. 이전)가 경산시 3개월 미만 거주 신청자 및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경산시 3개월 미만 거주 신청자 및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거주 신청자는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신청자격
민영주택	경산시/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1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8.08.23.) 입주자 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8.08.23.) 경산시,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인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8.08.23.)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 · 부금 포함)에 가입한 분

■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관련)

구 분	경산시 /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청약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8.08.23.)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 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 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본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 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다른 주택의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착오기재 등)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 예금에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적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 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지역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 대상은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가점제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 • 2순위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_국민은행 제외)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 일반공급만 해당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APT2you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파트투유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PC 청약시]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KB스타뱅킹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B스타뱅킹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청약/재건 – 신청」 ⇒ 「주택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되지 않은 분들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받아 인터넷 청약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입력하여야 함.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8/주민등록 가입자면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 · 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에서, 군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청약 가점 산정 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청약 항목 별 적용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구 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 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 ... [illegible] 4) 위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인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된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외)

■ 특별공급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동 · 호수 선정 방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 · 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특별공급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 ② ①번에서 입주자선정 후 남는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주택형별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③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세대수의 40% 이내 예비입주자를 선정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우선 배정하며 이후 남는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 물량으로 전환하여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 · 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공급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8.08.23.)를 기준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상 경산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신청자(2018.05.23. 이전)가 경산시 3개월 미만 거주 신청자 및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남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합니다.(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합니다.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APT2you)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 앞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견본주택)에서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노약자 ·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의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접수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되며,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 기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공급동 중 선택 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공급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 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 예비 지위를 인정합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판명될 경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III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18.08.29.(수) (APT2you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APT2you)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 국민은행 가입자 포함) • 당사 견본주택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1100)
일반공급	1순위	2018.08.30.(목)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금융결제원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2순위	2018.08.31.(금) 08:00~17:30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취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청약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구비서류 (계약체결 전 제출)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 서류	O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접수 장소에 비치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O		주민등록증	본인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O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www.apt2you.com)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O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O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O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인장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8.23.)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노약자 ·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불가자의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에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 접수장소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취약자를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 · 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입력」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I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 · 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 일시 : 2018.09.06.(목) • 확인방법 –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또는 APT2you 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18.09.18.(화)~2018.09.20.(목)(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1100)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아파트투유 홈페이지(apt2you.com)에서 당첨자 및 동 · 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으로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임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www.gsji-hoban.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18.09.06.(목) ~ 2018.09.15.(토) (10일간)	
인터넷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KB스타뱅킹 앱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조회」 ⇒ 「청약당첨사실 주택별조회」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APT2you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전화(ARS)		전화 1588-9999(서비스코드 9→1→3)	서비스 종료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특별공급 제외)	
	제공일시	2018.09.06.(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금융결제원 ARS(국번없이 1369)서비스는 2017.6.15.자로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V 계약 체결

■ 구비서류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구비서류	비고
공통		O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운전면허증)	
		O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1통 또는 본인서명확인서(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 절대 불가)	
		O		• 주민등록표등본(모두 포함하여 발급,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포함)	
		O		• 주민등록표초본(주소지 변동 내역 모두 포함하여 발급,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 입증,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O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O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O	• 대리계약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인감도장(대리인),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및 도장	
특별공급	기관 추천/ 다자녀/ 노부모		O	• 주민등록초본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입증,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 확인 불가시)	
			O	• 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신혼 부부	O		• 혼인관계증명서	
			O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록표등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O	• 임신증명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일반공급			O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 확인 불가시)	
			O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1통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O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O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8.23.)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계약 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KB국민은행	086801-01-007681	㈜호반산업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1차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2018.09.18.(화)~2018.09.20.(목))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계약도 동일하며) 최초 납부된 1차 계약금 이후 2차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은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 관리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임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됨) • 상기 관리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2동 103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20103홍길동"으로 기재)

■ 계약 시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 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된 경우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동일 세대 내에서 세대원 간 동일한 주택에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모두 계약이 가능하며(일반공급에 한함),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은 재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2009.04.01. 재당첨 제한 완화 조치에 의거)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에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 확인 서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청약관련 통장의 양도 등에 의한 당첨 또는 동 주택의 공급질서 교란 및 업무방해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이로 인한 이익 등은 청약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후 해약하거나 해약될 경우 계약금 및 위약금 제외한 총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 등)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당첨자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된 자로 판명된 경우 계약을 취소하며 그 당첨 기회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illegible]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7. 01. 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 따라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시행사 및 계약자가 공동으로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시행사에서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① 사업주체는 동 법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전산검색 대상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7조 제7항에 따른 통보받은 내용(같은 순위에서 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순차별 자격순위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자 대출 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예정이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정하여진 납부일에 납부하여야 함. • 총 분양대금의 10% 상당의 금액인 1차, 2차 계약금을 완납한 후에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1차 계약금을 납부하였더라도, 2차 계약금이 미납되면 중도금 대출이 불가한 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을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중도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할 경우 연체료 포함)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기관 이내라도 계약자의 개인 신용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기관 또는 중도금 대출 중 요구에 따라 중도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 및 이자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 정부대책 관련 "2017.8.2.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라 보증기관의 보증한도 또는 강화된 보증조건 등에 의거 세대당 중도금 대출 건수 중 기존에 제한되는 신규 보증 규제는 계약자 본인의 대출보증 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개시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부터는 계약자가 직접 부담하여야 함. [illegible] • 분양권 전매 요청시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도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 될 수 있음.

■ 입주자 사전 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에 의거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일정은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20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적용됨, 단, 기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 기준으로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부대 · 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공시설(실내골프연습장, 휘트니스 외), 작은도서관(키즈클럽), 근린생활시설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제37조 규정에 의합니다.

VI 추가 선택 품목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발코니 확장 금액	계약금(10%) 계약 시	중도금 2019.11.20	잔금 입주지정일	비고
59A	7,500,000	750,000	2,000,000	4,750,000	공사부위 견본주택 및 계약 시 확인 필요
59B	7,500,000	750,000	2,000,000	4,750,000	
84	10,500,000	1,050,000	2,000,000	7,450,000	

2)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좌	KB국민은행	086801-01-007681	㈜호반산업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발코니 확장 중도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2018.09.18.(화)~2018.09.20.(목))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발코니 확장 계약금을 제외한 개인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 됨) • 상기 관리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2동 103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20103홍길동"으로 기재)

3)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실내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실내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005.12.2 개정시행)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착공 등의 문제로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하고, 계약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추가 선택품목(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플러스 옵션(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선택안	설치개소	설치위치	옵션1 (일반형)	옵션2 (고급형)	비고
59A,B	1안	2	거실+침실1	3,590,000	4,090,000	• 제조사 : LG전자 (IoT 연계 기능 미적용) • 고급형 : 공기청정기능 • 모델명, 계약일정 및 장소 추후 공지 (견본주택 및 계약시 확인 필요)
	2-1안	3	거실+침실1+침실2	4,710,000	5,460,000	
	2-2안	3	거실+침실1+침실3(다목적실)	4,710,000	5,460,000	
	3안	4	거실+침실1+침실2+침실3(다목적실)	5,830,000	6,830,000	
84	1안	3	거실+주방+침실1	4,890,000	5,640,000	
	2-1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2	6,020,000	7,020,000	
	2-2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3	6,020,000	7,020,000	
	3안	5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590,000	8,840,000	
	4안	6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다목적실	8,710,000	10,210,000	

(2) 다목적실 시스템가구

(단위 :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위치	적용사항	금액	비 고
84	'⌐' 자형 주방 선택시	다목적실 시스템 가구	1,000,000	• 계약일정 및 장소 추후 공지(계약시 견본주택 확인 필요)

(3) 하이브리드 쿡탑

(단위 :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위치	적용사항	금액	비 고
59A	주방	하이브리드 전기 3구 (LG전자 / 모델명 : BEI-3GI)	900,000	• 계약일정 및 장소 추후 공지(계약시 견본주택 확인 필요)
59B				
84				

(4)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플러스 옵션 선택 품목 납부계좌	KB국민은행	086801-01-007681	㈜호반산업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중도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2018.09.18.(화)~2018.09.20.(목))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계약금을 제외한 개인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 됨) • 상기 관리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2동 103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20103홍길동"으로 기재)

3)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임) • 추가 선택품목에 대해서는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당사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 세대에 한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시스템에어컨은 상기 선택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설치장소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가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층,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시스템에어컨 설치금액 매립냉매배관(47개소) 미시공으로 추후 감액분이 반영된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입주자가 추가로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부세대 비확장시 천장단열재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에는 에어컨 냉매배관이 기본으로 59A : 3개소(거실, 침실1,2) / 84, 59B : 4개소(거실, 침실1,2,3) 설치되며, 위치 이동, 추가 설치 등의 계약자의 요구는 적용이 불가합니다.(거실-스탠드형, 침실1,2,3-벽걸이형(액자형은 설치 불가))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플러스 옵션의 유형, 제품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관계사의 도산 및 현장사공 상황 등에 따라 입주시 동질, 동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1) 공통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 · 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 · 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2) 마이너스 옵션 적용 품목 및 범위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품목
바닥재	(강마루(걸레받이 포함)) : 거실(주방, 식당), 복도 (타일, 인조대리석, 디딤석(걸레받이 포함)) : 현관바닥 (PVC륨) : 각 침실바닥 (타일 및 제료분리대) :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욕실바닥	각실 바닥 미장 마감 각실 바닥 난방(거실, 주방, 복도, 침실) 발코니바닥 방수
벽, 천정재	(벽지 및 천장지) : 현관, 거실, 주방, 식당, 복도, 침실 (벽 및 천정 도장) : 발코니, 대피공간(실외기실) (타일) : 거실아트월, 주방벽, 욕실벽, 인테리어 마감 (기타) : 몰딩, 우물천정	벽 : 단열+석고보드 또는 미장 또는 콘크리트면처리 천장(천정틀, 석고보드), 커텐박스
조명기구	조명기구 일체	콘센트 및 스위치용 배관, 배선
욕실	욕실바닥 및 벽 타일(타일 시공을 위한 미장 포함) 욕실장, 샤워부스, 욕실천정재, 삭재(인조대리석 선반 등) 재료분리대, 욕조하부틀, 욕조, 코킹, 욕실환풍기, 스위치, 콘센트, 욕실문, 세면기, 양변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슬리브, 전기 통신배관 배선
주방가구 및 기타사항	주방가구 : 상,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주방TV, 주방벽타일, 주방수전, 싱크볼, 음식물탈수기, 가스쿡탑(59: 3구/84: 4구), 렌지후드	설비배관(급배수, 난방), 소방관련시설, 전기,통신 배관/배선 (주방TV폰 등의 전기 입선), 주방 배기덕트
일반가구		없음
창호 및 기타사항	창호(각 침실 및 욕실 문틀, 목문짝, 목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실외기실 플라스틱 출입창호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 방화문, 주방 발코니 도어, 대피공간도어, 현관키에어, 월패드, 각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 (59A : 거실, 침실1,2 / 59B, 84 : 거실, 침실1,2,3)

3)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59A	59B	84
기본선택(마이너스 옵션 금액)	19,937,000	20,000,000	27,004,000

4)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 계약 의 공급 계약자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판매조건이 계약하는 세대는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옵션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마감 등)은 설계에 의해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입주자는 잔금 납부 및 입주 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 하도록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최초 입주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의 시공,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액(1천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관련하여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공사에 훼손을 해서는 아니 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보상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하는 자재는 주택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등기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사항), 설치관련 등을 사업주체에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 · 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가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VII 기타

▣ 유의사항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1)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등재일 처리일)기준임. (4)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5)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6)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되지 않음)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 · 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 · 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 · 저가주택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 (현재 :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 · 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 무주택자)종전에 소형 · 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 · 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 특별공급 제외)시 적용함.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청약통장의 주택규모 변경요건 – 주택규모를 이전보다 크게 변경시 별도의 제한기간 없이 수시 변경가능 – 주택규모를 이전보다 작게 변경 불필요(지역별 · 주택규모별 예치금액이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의 주택에 청약 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에 신청가능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 신청자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부적격 당첨자 포함)에는 2순위 당첨자로 간주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청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주거전용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 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에 대한 면적증감 정산하지 않기로 함.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에 대하여는 분양카탈로그, 계약서, 공사도면, 견본주택 CD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illegible] • 아파트 외부 색채, 옥외광고물, 경관조명 등 제품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공급금액 및 분양 조건은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illegible]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신청자는 청약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당첨자는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된 (필요시)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 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llegible] • 본 주택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illegible]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주택 공급질서 보호 등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정리 완료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 옵션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하여 설계된 것으로, 발코니 비확장을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발코니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형 선택세대에는 별도의 추가금액이 부과됨.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가 확장형 세대와 다를 수 있음. [illegible] • 발코니 확장 시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 각 세대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illegible] • 발코니 확장 세대의 경우 내부의 단열 및 방습에 관련된 기준은 법에 정하여진 해당 기준에 의거 설계 및 시공되었음. [illegible] • 발코니 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발코니 비확장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한 민원 제기 시 입주자에게 일체의 책임이 있음.

VIII 단지 여건 사항

▣ 사업지구여건 및 단지 외부여건
• 경산 진량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상 · 하수도, 공원, 연결녹지, 학교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개발사업자(경산시)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 취소 · 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차기 인허가 승인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이에 따른 당사 사업지의 설계상의 일부 변경이 생길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및 해당관청의 인허가 과정에서 진량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본 주택은 경산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속한 구역에 건축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까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시 공유대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당해 지구와 관련한 각종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는 당해 지구 사업진행지구이며 현재 공사 중으로서 입주 후 주변단지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당해 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근린공원, 소공원, 연결녹지, 공개공지, 공공청사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기타 외부인 통행에 의한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광역도로 등 당해 지구 외부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 • 단지주변 및 단지 간 도시계획도로(북측: 폭46M, 서측: 폭8M)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도로에 인접한 주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변도로 등에 의해 단지 진출입시 혼잡 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인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 · 확장 도로는 인 · 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부지 북측 완충녹지, 동측 경관녹지, 남측 경관녹지 등은 현재 경산시의 계획현황을 반영한 것이며, 추후 경산시의 조성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기타용지, 공원 및 녹지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건설,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 · 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동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은 없음. • 도로, 하수, 가스,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해당공사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일부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교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당해 사업지는 통학구역 학교용지계획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대상임. • 당해 지구는 진량초등학교 학구로서 주택건설사업 549세대로 발생하는 학생은 진량초등학교와 진량중학교군(신상중, 진량중)에 수용 가능함. • 진량중,고등학교 교자로의 사업지에서 대구방향 좌회전이 불가하며, 우회전하여 외회전행 사거리에서 유턴하여야 하는 등의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본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향후 제반 사안이 변동 될 경우 입주예정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 변경 사유 발생 시 사전 통지할 예정임. •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현오시설 유 · 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냉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 ·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 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발췌 · 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 될 수 있으며, 이에 인한 사업주체, 시공사와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음.

▣ 단지 내부여건
※ 다음의 설계에 관련한 내부여건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 · 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 · 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규모, 형태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마을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입주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 및 운용에 따라 시설의 위치,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디자인, 캐노피, 지붕형태 등은 당사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음.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본 주택은 각 세대 배치상 동별, 층별, 향별 및 세대 상호간의 향 ·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 보수 ·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 내 · 외부의 레벨차로 인한 옹벽 등의 설치로 인해 조망권, 일조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사전에 모형을 확인하여야 함. • 단지 내 · 외부에 설치되는 옹벽, 선석, 조경석 등의 형태 및 높이, 마감 등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타동에 추가로 설치 될수 있음. • 북쪽방향 대로변쪽 부지경계에 외부소음예측보고서에 따른 높이 약 13.5m의 방음벽이 약 214m정도로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저층 세대의 경관조망이 불리할 수 있음. •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계획 및 이용 등으로 외부인이 출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소음 등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조성되었기 때문에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은 없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인접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주동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어 해당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 유지 ·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주동 옥상의 형태는 본 공사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 옥상 등에 표현되는 줄눈은 시공과정 중 공법에 따라 조정, 삭제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 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등의 실외기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설치 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 내에서 설치되는 에어컨 등 냉난방기기는 일부만 실시 될 수 있음. • 각 동 설비배관의 위치 및 형태는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심의 결과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문주계획은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필로티 출입구 상부 캐노피 설치부위는 당사 특화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면 몰딩설치에 따라 세대 창호의 크기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외부의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경관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위치 및 개소는 사업승인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본 공사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악취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당사 디자인 특화계획에 따라 위치 및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101동 후면 1개소, 102동 후면 1개소, 105~106동 사이 전면 1개소, 어린이집 후면 1개소 설치예정이며, 당사 디자인 특화계획에 따라 위치 및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음. [illegible]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지하주차장에 연결되어 있으며, 출입구 통행 및 보도 연결부위 등에 따라 일부 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illegible]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함.

IX 설계 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 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자가 희망하는 용품(가전제품의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설치가 불가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욕조 포함).–고정형 가구 상 · 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아일랜드 식탁 포함).–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주방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시공됨.–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됨.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시스템 에어컨 옵션선택과 개별 에어컨 설치 등으로 인해 실외기실 내부에 실외기를 2단으로 설치 할 경우, 냉방효율이 다소 저하될 수 있음(실외기 1대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멀티형 권장). • 욕실 내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조 및 샤워부스 하부에는 제외됨. •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세대 발코니 내 대피공간에는 화재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세대내 문 및 창의 위치는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 홀의 저층부는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함.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각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침실 등이 엘리베이터 샤프트나, 계단실에 인접한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음. • 본 주택 마감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본 주택 마감자재리스트는 당사 홈페이지(www.gsji-hoban.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확장형 선택시 가변형 벽체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없음. • 고객의 개별 선택에 따라 가변형 벽체가 설치 또는 미설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또한 가변형 벽체 설치 또는 미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차이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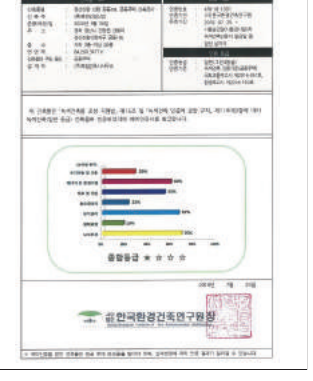

■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 · 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 사 명	(주)서한종합건축사사무소	(주)태양이엔시	(주)유원건축사사무소	(주)유원건축사사무소
감리금액	1,155,110,000	404,504,000	185,000,000	15,000,000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5612018-101-0006400호	98,032,90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분양보증 주요 내용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4.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서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고 사유를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을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 · 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 의해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채권자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그 이전에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항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의한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주체, 시공회사	(주)호반산업	200111-0308994

▣ 견본주택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1100 ▣ 사이버 견본주택 : www.gsji-hoban.co.kr ▣ 분양문의 : ☎ 1566-0226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경 산 진량선화지구 호반베르디움

1566-0226

총 549세대 | 59㎡A / 59㎡B / 84㎡

시행 / 시공 호반산업